

학생지원서비스 규정

- 제 정 : 2012. 6. 29.
- 개 정 : 2017. 9. 1.
- 개 정 : 2018. 3. 1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 학생들의 면학풍토와 클린캠퍼스를 조성하고, 여가활용 및 건전한 대학 문화정착에 기여하게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학생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“학생활동”이라 함은 단체등록을 필한 학생자치단체 또는 교직원의 지도를 받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활동을 말한다.

1. 학술연구활동
2. 문화·예술활동
3. 각종 봉사활동
4. 스포츠 및 취미활동
5. 정서함양을 위한 교양 등 학생활동
6. 기타 학생지원처장이 인정하는 학생활동

제3조(학생활동 지원)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

1. 학생활동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학생활동 지원을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3. 학생활동 상담, 시설 등의 지원 및 복지에 관한 사항
4. 학생활동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
5. 기타 학생활동 지원에 관련된 사항

제4조(지원대상) 학생활동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대외적 공모전 및 경진대회 등 학교의 명예를 높이는 활동
2. 학생들의 자아개발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활동
3. 총학생회 및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활동
4. 학생들의 편의 및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활동
5. 학업 및 인격도야에 도움이 되는 활동
6. 학생활동 중 부상자의 보험청구

6-1-9 학생지원서비스 규정

- 7. 사회봉사와 관련된 활동
- 8. 학생활동에 필요한 집기, 비품 및 사무기기 등의 지원
- 9. 학생상담에 관련된 활동
- 10. 기타 학생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

제5조(지원결정) ① 학생지원처장은 학생활동의 내용 및 행사 규모에 따라 물품 또는 현금 등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한다.

② 지원을 받은 활동 등은 행사종료 후 10일 이내에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검토 후 학생복지 처장의 전결사항으로 처리 한다.

③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차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제6조(평가) 학생지원(상담)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불만요인 최소화를 위하여 지원(상담)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학생활동 지원서비스 개선방안에 연계되도록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